

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개발제한구역 내 국비를 지원받은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절차 간소화(안 제17조 제1항 개정)

경미한 사항*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조사업 추진

* ①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증감(단, 도로 등 선형시설은 시점·종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), ② 사업기간 변경

나. 재검토기한 연장(안 제23조 개정)

재검토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녹색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※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,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
(정부세종청사 6동 4층, 우편번호 30103)

전화 : 044-201-3743(3744) 팩스 : 044-201-5574